

관세정책과 식품산업

김 강 립 / 보건복지부 식품유통과 행정사무관

I. 머 리 말

1995년은 세계경제의 흐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해 종료된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로 그간 세계경제의 기초를 움직여오던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체제가 세계 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로 간판을 바꾸면서 그간 세계경제의 운용방향이 무역의 완전자유화, 완전경쟁화를 강력히 지향하는 체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WTO체제의 주요 특징은 그간 가트체제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오던 관세율의 인하와 함께 모든 품목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통한 명실상부한 자유무역질서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즉 관세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조치와 국지적으로 논의되던 섬유, 철강 등에 대한 국제적 규제내용을 전 세계가 참여하는 국제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어 장기간 협상한 결과 비관세 장벽의 전면적 철폐를 향한 다양한 조치들이 규정화, 기구화되어 향후 세계 무역질서를 조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의 주요 내용에는 그간 각국에서 진행된 각종 무역보호조치의 철폐 및 자유롭고 완전한 경쟁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보조금 등 정부의 경제개입을 최소화하는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러한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에서 각국은 자국의 경제활성화와 함께 자국 산업이 받게 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및 산업계가 우루과이협상 결과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그 대처방안에 대하여도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가지는 공통되는 결론은 우리 산업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철저한 경쟁과 자유로운 경제 환경하에서는 기업의 자생적 경쟁체제 구축이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의 자구노력과 함께 각국 정부는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도 이러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는 시장진입의 용이성을 증대시키는 조치와 원료 및 완제품의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물류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시설을 재정비하는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의 방향성 전환 등이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무

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세정의 방향전환을 통한 것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모든 산업이 원료조달의 상당량을 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관세정책의 방향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않은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관세정책을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식품제조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관세정책을 개관하고 식품과 관련된 관세율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관세정책 개요

관세란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러한 관세는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부과되기도 하고 산업구조 조정 또는 내국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과 수단은 각국의 경제상황 및 사회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각종 관세정책 수단과 역할, 경제발전에 따른 관세정책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형행 관세율 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관세정책의 수단과 역할

한국의 관세정책은 관세율정책, 탄력관세제도, 조세감면 및 분할납부제도, 관세환급제도 및 통관제도 그리고 국제관세협력 등의 수단을 통하여 실시되어 왔다.

가. 관세율 정책

관세정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수단이 관세율의 책정을 통한 관세율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무역의 대상이 되는 재화에 대하여 품목별 관세율을 책정함으로써 외국과 국내의 가격차를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국내에서의 생산·소비

의 구성이 달라짐과 동시에 무역수지나 정부의 조세수입도 영향을 받게 되는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큰 관세정책의 수단이다.

나. 탄력관세제도

관세법에 의하여 규정되는 관세율은 입법부에서 법으로 의결하여 결정됨으로써 급변하는 경제현실을 신속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법률로 정해진 일정한 범위내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세율을 신속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다.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제도

특정물품의 수입시 관세납부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거나 분할 납부토록 함으로써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생산활동을 촉진시키는 수단이다. 특정 산업부문을 육성하고자 할 때 유용한 정책 수단이다.

라. 관세환급제도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으로써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수입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수출기간중 관세부담을 지워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1975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마. 통관제도

통관제도의 목적은 수출입품의 원활한 처리에 있으나 수출물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처리와 각종 수수료의 경감 등으로 수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관세정책수단이다.

바. 국제관세협력

외국과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는 국제관세협상은 주로 무역의 증대 및 국제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정에서 국제관세협력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세계경제가 불확화되는 상황에서 국제관세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 관세정책의 역할

일반적으로 관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그 역할은 산업보호 효과·소비효과·재정수입효과·교역조건효과 그리고 국제수지 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재정수입효과와 국내 산업의 보호효과로 대별할 수 있다. 관세정책은 관세부과의 결과로 경제발전에 따른 투자재원의 확보에 기여하여 왔고, 성장전략부문의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분할납부 등 투자지원과 가공단계별 차등관세 부과로 제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감면제도,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으로 수출산업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2. 경제발전에 따른 관세정책의 변화

가. 경제개발 초기단계의 관세정책 (1960년대)

1962년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함에 따라 관세정책은 투자자원 마련을 위한 관세수입의 확보를 중시하였고, 국내 유치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평균관세를 39% 내외의 고관세율체제를 유지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원재료는 낮게, 완제품은 높게하는 Tariff Escalation System을 유지하였다.

한편 경제성장의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국내산업의 투자지원을 위하여 기초설비부품·건설용 장비 등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확대하였으며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용 원자재, 보세공장기계, 수출물품 제조용 기계에 대한 관세감면도 확대하였다. 국민자

본의 축적이 취약한 60년대에 이러한 대폭적인 관세지원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고 내부자본의 축적을 유도하여 기업성장 및 수출을 촉진하는데 기여하였다.

나. 경제성장기의 관세정책(1970년대)

60년대에는 풍부한 유희노동력을 이용한 경공업 위주의 공업화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70년대에는 종래의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로는 지속적 성장과 수출증대가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의 지속적 증대를 추진하였고 관세도 산업정책적 기능이 강화되었다.

관세율 구조는 중화학공업 보호위주로 전환하고 중화학공업·자원개발산업의 시설재 및 원료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강화하였으며 시설기계류 도입시 관세분할 납부를 확대하였다. 또한 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사전 면세제도에서 사후 환급제도로 전환(1975년)하여 수출업계의 자금부담 압박의 완화를 위하여 징수유예제도를 시행하였다.

한편 석유파동에 따른 국제적 인플레이션과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덤핑 등 국제무역질서의 혼란에 따라 국내 물가안정을 위하여 탄력관세제도를 효율화 하였고,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반덤핑관세·차액관세제도가 보완·신설되었다.

다. 경제안정 및 자유화시기의 관세정책 (1980년대)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선진국의 고실업·고인플레이션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후발개도국의 참여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80년대초반 경제안정정책의 성공적 수행으로 안정 성장 기반을 다짐에 따라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전반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방경제체제로의 이행과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이에따라 관세정책은 수입물품과의 경쟁 촉진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다.

【평균관세율변동추이】

(단위 : %)

구 분	'82	'84	'86	'88	'90
평균관세율	23.7	21.9	19.9	18.1	11.4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간·품목간 세율격차도 축소되었다. 또한 기존의 특정산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산업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기능별 감면제도로 전환되었다.

【가공단계별 관세율 구조의 변화】

(단위 : %)

구 분	'82	'84	'86	'88	'90
공산품전체	22.6	20.6	18.7	16.9	9.7
원 료	11.9	10.6	10.0	9.8	3.9
중 간 재	21.5	18.7	18.1	17.1	10.7
완 제 품	26.4	24.7	21.8	17.1	11.2

3. 현행 관세정책 운용 현황

가. 관세율 체계

우리나라의 관세율체계는 관세율인하예시제와 Tariff Escalation System에서 Uniform Tariff System으로의 전환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관세율인하예시제란 관세율의 인하율과 인하품목을 미리 내외에 알림으로써 대외통상협력을 증진하고 국내 산업의 적응기간을 부여하여 관세율의 점진적 변화에 따른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1984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는 2차에 걸친 관세율인하예시제가 '94년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금년부터 출범하는 세계무역기구 및 각종 자유무역 조치들의 시행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며 향후 5년간 적용될 관세율을 책정하기 위하여 '95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하고 금년에 관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관세율인하예시제의 추진에 따라 '94년에는 관세율이 선진국 수준에 육박한 7.9%까지 인하되었다.

【관세율 인하예시제】

(단위 : %)

구 분	관세율 수준				외국의 관세율(88)		
	'91	'92	'93	'94	미국	일본	EU
전 체	11.4	10.1	8.9	7.9	6.2	5.9	7.9
공산품	9.7	8.4	7.1	6.2	6.1	4.6	6.7
농산물	19.9	18.5	17.8	16.6	-	-	-

또한 관세율구조는 가공단계별로 관세율이 높아지는 Tariff Escalation System을 유지하고 있으나 '94년에는 중간재와 완제품간의 세율격차가 거의 없어짐으로써 Uniform Tariff System에 크게 접근하고 있다.

【가공단계별 관세율 구조】

(단위 : %)

구 분	원재료	중간재	완제품	
한국	'91	3.9	10.7	11.2
	'94	2.8	7.0	7.1
미국	'87	1.8	6.1	6.9
일본	'87	1.4	6.3	6.4

이러한 법으로 정하여지는 기본관세율에 대하여 행정부가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는 탄력관세제도의 운용현황을 보면 먼저 현재 운용되고 있는 탄력관세의 종류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물가평형관세, 할당관세 및 국제협력관세 등이 있다. 그러나 주로 할당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가 활용되어 왔다.

할당관세는 주로 물자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인하의 목적으로, 긴급관세 및 조정관세를 특정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탄력관세 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86	'87	'88	'89	'90
운용실적	75,964	153,576	223,177	171,468	374,231

나. 관세상 수출 및 산업지원제도

관세를 통한 수출 및 산업지원은 '88년

이후 감소되는 추세로 '88년 이후 독자관리 대책 및 개방화 시책에 따라 기장상계제도, 징수유예제도 등 수출 지원제도가 축소되었으며 관세율 인하 및 원재료, 시설재의 국산화 진전에 따라 감면대상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90년의 관세법 개정시 수출부진 및 경쟁력 약화를 감안하여 산업지원제도를 보완하였는데 한시적인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관세감면, 공장자동화 기기에 대한 관세감면, 고도기술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의 인정과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도입하는 시설기계를 대하여 관세분할납부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통관제도

'90년 이전에는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의 세액심사후 납부하여 수입면허를 받았으나 '91년부터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적정한 세액심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 수입면허를 하고 사후에 세액심사를 하고 있다.

라. 국제관세협력

우루과이라운드의 진행과 함께 국제관세협력업무의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WTO의 출범이후 이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세계경제에서의 우리 위치가 부각됨에 따라 지역적인 관세협력의 중요도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중요한 국제협력관세는 WTO체제와 GSTP(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 Among Developing Countries), 방콕협정 등이 있다. WTO체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출범한 세계무역질서체제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보다 더욱 강력하며 포괄적인 범위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무역질서의 세계적 체제이고, GSTP는 개도국간 교역증진을 위하여 상호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 또는 완화

함으로써 고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89년 4월 48개국의 1,550개 품목에 대한 관세양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등장한 무역질서체제이다. 방콕협정(ESCAP 개발도상국간무역협정)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개발도상국간 무역확대를 위한 특혜관세협정으로 '76년 6월에 발표되었다.

4. 관세정책 전망

가. 관세정책의 여건

WTO의 출범과 함께 일부 농산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수입자유화되고 자본시장도 개방됨에 따라 전면적인 경제개방이 진행된 상태에 도달해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고임금에 따른 생산 원가 코스트의 상승 및 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저관세율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무세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세율의 하락 움직임은 관세의 재정수입 확보기능을 날로 약화시키고 있으며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효과도 종전보다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다만,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로 국내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보조금 및 각종 비관세장벽이 상당부분 철폐될 예정이어서 유일한 합법적 무역장벽으로서 관세의 한계조정(Marginal Adjustment)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통상마찰의 심화에 의하여 관세정책의 독립적 운용은 제한받게 되었고 UR관세협상에 따라 탄력적인 관세율 운영에 제약이 커지고 있다.

나. 관세정책의 역할

앞으로 한국경제는 개방화, 국제화를 추구하면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정책은 정부의 개입보다는 민간주도와 시장기구를 통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며, 특정산업의 육성보다는 부문중립적이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 기술개발, 인력양성이 더

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향후의 관세정책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통하여 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며 무역규모의 확대와 국제무역상 지위향상에 적정하도록 통관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통관서비스를 개선하고 관세를 통한 국제경제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다. 관세율 정책

향후 관세율정책에서는 과거의 재정수입을 강조하던 정책적 측면보다는 개방경제 하에서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산업구조를 촉진시키는 관세율정책의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대외경쟁도입을 통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낮고 균등한 관세율체제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의 중립성을 유지하여 시장기능을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산업간, 품목간 세율격차가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과의 경쟁을 통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원자재의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국내 제조업의 원가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 생산이 없거나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기초원료, 중간재, 자본재 등의 과세율을 무세 또는 국제수준으로 인하하여야 한다.

【원자재 및 중간재 관세율 비교】

(단위 : %)

구 분	한 국				외 국('87)		
	'91	'92	'93	'94	미국	일본	EU
원자재	3.9	3.3	3.2	2.8	1.8	1.4	1.6
중간재	10.7	9.3	7.8	7.0	6.1	6.3	6.2

UR타결로 인한 양허품목의 확대로 국내 산업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관세정책도 이 부분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긴급관세(Safeguard)를 적절히 운용하고 비양허품목에 대하여는 조정관세를 활용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

수단의 운용으로 국내 산업이 받게될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라. 수출 및 산업지원제도

개방경제화의 조류에 따라 특정부문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한 관세감면은 자원배분의 인위적 왜곡을 조장하고 산업에 대한 관세의 중립성을 저해하므로 점차 지양될 것으로 보이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 및 연구부문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키는 부문에 대하여는 선별적인 감면제도가 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평균관세율이 선진국 수준인 5%내외로 인하될 경우 국제협약 또는 상호주의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의 산업지원기능은 사라질 전망이다.

마. 국제관세협력

세계교역질서의 자유주의화, 경쟁지향화에 즈음하여 국제간 관세협상 및 협력은 기능 및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 무역질서 개편을 위한 다자간 협상 및 양자간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며 개도국에 대하여는 관세협력을 통한 경제교류를 증진함과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국가간의 관세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지역주의화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우리의 국익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관세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과 정책부문의 긴밀한 사전협력 및 홍보로 새로운 무역환경변화에 민간부문의 능동적 대응을 유도하고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경쟁력의 총체적 제고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국제간 관세협력의 중요 내용을 보면 UR이후의 후속조치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라운드가 형성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가 세계적인 교역질서를 관장하는 체제인 반면 지역적인 또는 유사한 경제적 지위를

접하는 국가간의 협력도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GSTP의 2차협상시 적극 참여하여 교역상대국의 확대 및 비동맹국가와의 협력도 강화가 요청된다. 한편 지역적 경제협력체에 대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의 경제수준에 걸맞는 역할의 수행과 의무의 분담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방콕협정의 회원국 확대 및 양허폭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APEC(Asian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등 환태평양 지역내 무역자유화의 촉진 및 본격적인 관세협상에 적절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간 관세협력의 과정에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민간의 국제적 수요를 능동적으로 반영시키고 정부와 민간간의 공동대응체제 구축을 통하여 정보공유 및 효율적 경쟁체제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III. 식품산업과 관세정책

1. 식품관련 관세정책 개요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산업은 여타의 공업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식용으로 사용되는 식품을 생산한다는 특징인데 이로인하여 식품공업의 시설 및 상품은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서 위생의 측면이 강조되며, 주원료가 농수산업에 의하여 조달된다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의 창출면에서 볼때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경공업 산업으로 시설재나 자본재가 아닌 소비재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료의 상당 부분을 몇가지 품목의 경우에는 전량을 수입하는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큰 산업이다. 이러한 식품산업의 특징이 관세정책에 미친 영향을 보면, 고부가가치 생산산업이나 자본재·시설재 생산산업에 편중된 산업정책에 밀려 경제정책의 배려상 항상 서자의 위치에 놓여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식품산업은 원료가 완제품보다 관세율이 높은 거의 유일한 산

업이 되었다. 이는 관세율 구조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기타의 세제나 금융상의 조치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정책담당자들의 식품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식품산업의 발전 및 육성이 부진한 사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산업은 무엇보다도 국민이 소비하는 식품을 생산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식품산업이 발전,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 안전성 및 위생성이 결여되거나 수준이 뒤쳐지는 식품을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산업의 육성은 산업육성을 통한 소득증대 및 고용확대뿐만 아니라 국민보건과 건강의 증진 차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여기서는 주로 식품관련 품목들의 관세율을 중심으로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식품관련 관세율을 살펴보고 현행 세율구조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식품관련 관세율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상 식품관련 품목은 다른 분야와 달리 구조상, 내용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관세율 구조가 가공단계별로 차등적으로 인상되어 지는 Tariff Escalation System이 일반적인 모습이고 공산품의 경우 원료와 완제품간 관세율 격차가 축소되는 Uniform Tariff System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구조화되어 있는데, 식품의 경우에는 원료가 완제품보다 관세율이 낮은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일반적 관세율 구조와는 상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원료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식품산업의 가격경쟁력이 낮게되며, 수입식품의 증가를 유도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세율구조의 형성배경에는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적 배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식품산업의 원료가 농산물이므로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 인하가 국내 농업에 대한 피해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품목들의 관세율은 대부분 고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특정 품목의 원료로 사용되는 대체 품목간의 관세율이 상이하어 수입시 국제시세가 낮은 품목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구매함으로써 외화를 절약하고 국제수지에 기여하며, 동시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등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의 소량이 국내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고관세율을 적용하므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에 유지관련 제품의 관세율을 분석하면서 언급하고자 한다.

관세율이 경쟁상대국이나 외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는 모습들도 식품관련 관세율 구조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외국과, 특히 경쟁상대국과의 관세율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율 중 일부 품목은 경제규모나 산업의 환경이 유사한 외국에 비하여 불균형적으로 높거나 낮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품목별 관세율 분석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다.

3. 식품관련 관세율조정의 필요성

가.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식품산업의 원료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며 관세율의 합리적 조정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촉진시키고 연구개발 기능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세계의 교역질서가 개방화, 자유화되는 현실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산업은 도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식품산업의 생존 및 나아가 육성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결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WTO체제하에서 합법적으로 정부가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관세율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그 가치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식품산업의 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경쟁력 제고란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하고 조정하는 것이 개방화의 조류속에서 우리의 식품산업이 성장·육성될 수 있는 필수조건일 것이다.

나. 식품산업의 수출증진 지원

현재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수출물량은 국가 전체 수출의 약 1.1% 수준에 불과하나 수출규모면에서 보면 꾸준한 신장세를 나타내는 수출증가 산업으로 볼 수 있어, 원료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내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수출물량 증대 및 시장 개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아울러 날로 증가하는 수입식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간접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연도별 가공식품 수출실적】

(단위 : 1,000US\$, %)

연 도	1991	1992	1993	1994	1995전망
총 계	796,104	839,539	883,472	993,968	1,139,008
증 가 율 (전년대비)	-	5.45	5.23	12.50	14.59

바. 가공식품의 원가절감으로 물가안정에 기여

원료에 대한 관세율 인하 등 관세율 구조의 합리적 조정은 식품산업의 원가절감으로 이어져 관련 생산제품의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가공식품의 가격안정 효과는 전체 물가, 특히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에 대한 식품의 영향력이 큰 점을 감안할 때 국가경제의 물가안정기조의 유지면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의 구조 개선 도모

가공식품산업의 육성은 원료산업인 농축수산업의 구조조정 및 체질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식품산업의 발전은 원료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는 등 농업 등의 1차산업에 대한 전방효과가 있는 산업이므로 합리적인 관세율 조정을 통한 식품산업의 육성은 국내 농업의 구조개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는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 인하가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만 낳는다고 이해되고 있으나 식품산업이 발달하여야 그 원료의 공급산업인 농업이 발달할 수 있으며 식품산업의 원료로 이용되는 품목의 재배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IV. 식품의 품목별 관세율 개선방안

1. 개 관

금년은 관세율인하예시제의 연장적용이 만료되기 때문에 '96년 이후 적용될 관세율의 개편작업이 진행될 것을 보이며 더욱이 국제관세기구(ICO)에 의하여 주관되고 있는 세번(HS)체계의 전반적 재조정이 완료되는 시기이므로 우리의 관세율 체계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행 관세정책중 핵심이 되는 관세율 구조를 식품산업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품목별로 관세율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주로 다음의 몇가지 원칙에 합당한 품목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요점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하며, 모든 식품관련 품목의 구조가 반영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먼저 원료와 완제품간 관세율 불균형 품목과 대체품목간 또는 경쟁상대국과의 관세율 불균형 품목을 중심으로 하되 국내산업에 피해가 없는 국내에서 동 품목이 생산되지

않는 비경쟁 품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물론 관세율 조정의 필요가 있고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일부 품목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2. 커피류

커피는 원료로 쓰이는 커피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완제품은 일부 수입되고 있는 품목이다. 커피의 완제품을 가공단계별로 보면 커피두를 1차가공(볶은 과정)한 볶은 커피가 있다. 흔히 원두커피라고 판매되고 소비되는 품목이 바로 볶은 커피이다. 이 볶은 커피를 농축시킨 것이 2차가공품인 커피농축액으로 소비자들에게 바로 판매되기 보다는 주로 캔커피의 원료로 사용되거나 인스턴트커피의 원료가 된다. 이 농축액을 건조시킨 것이 인스턴트커피인데 건조방식에 따라 냉동건조커피와 스프레이건조커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연원료인 커피두를 제외한 모든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커피관련제품의 관세율을 보면 커피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의 관세율은 가공단계와 무관하게 동일한 관세율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와 사정이 유사한 일본의 관세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 소규모 자본투자로 생산될 수 있는 볶은커피의 관세율을 상당히 높게 유지하여 자국의 커피제조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자국생산이 불가능한 커피두에 대하여는 무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국내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자국의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율을 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국의 커피 관세율 현황】

(단위 : %)

품 목	국 가		
	한 국	일 본	미 국
커피 두	3	0	0
볶은 커피	8	20	0
커피 농축액	8	16	0
인스턴트커피	8	12.3	0

우리나라의 커피산업은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꾸준히 성장하여 내수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수출도 신장시켜 왔다. 그러나 커피에 대한 수입실적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세율을 비롯한 관련 세제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커피완제품 수출실적-커피믹스 포함】

(단위 : 톤, 천불)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물 량	1,117	1,359	1,357	2,115	2,044
금 액	6,498	7,906	6,944	12,406	11,353

【한국의 커피제품 수입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물 량	45	555	917	940	1,490	1,290	1,127
금 액	434	5,735	7,737	10,864	14,653	12,599	11,683

한편 커피와 같이 소비되는 제품인 커피크리머의 경우는 관세율 구조상 커피보다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커피크리머의 주요 원료는 카세인, 카세인산염인데 이는 국내생산이 전무한 품목이다. 그러나 관세율을 보면 커피크리머가 8%의 우리나라 평균관세율 수준에 근접한 세율인 반면 카세인과 카세인산염은 완제품인 커피크리머의 2배가 넘는 20%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는 카세인이 유제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유가공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카세인의 제조 특성상 국내의 유제품 생산조건으로는 생산의 경제성이 없어 국내 생산이 전무한 품목으로 이러한 원료와 완제품간의 불균형한 관세율 구조가 커피크리머 완제품의 수입을 조장하고 국내제조업의 투자욕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커피크리머의 관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상당한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인 커피산업의 육성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커피크리머의 관세율 비교】

(단위 : %)

국 가 품 목	국 가			
	한 국	일 본	대 만	호 주
카 세 인	20	0	5	0
카세인산염	20	6.5	5	0
커피크리머	8	25	20	0

3. 토마토케첩

토마토케첩은 토마토펜이스트를 원료로 하여 제조되는 품목이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토마토가 토마토펜이스트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식품공업용 원료인 토마토펜이스트를 제조하기에 적합한 토마토는 특정 기후에 한정되어 재배되는 품종으로 국내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한 품종이다. 즉 국내에서 재배되는 토마토는 식품공업용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토마토펜이스트의 관세율여하가 국내 토마토재배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토마토펜이스트는 가공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식용으로 소비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내산의 식용 토마토와는 완전히 분리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세율을 보면 토마토케첩과 토마토펜이스트에 대한 관세율을 같은 수준인 8%로 적용하여 원료와 완제품간 세율의 격차가 없어 국내제조업의 투자욕을 저하시키고 수입품의 국내 유입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토마토펜이스트의 지난 3년간 수요와 공급실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마토펜이스트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량 국내에서 토마토케첩의 제조용으로 소비되는 품목이다. 이러한 품목에 대하여 관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경우 완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 제조를 포기, 또는

신규투자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토마토페이스트 수급실적】

(단위 : 톤, %)

구 분		'92	'93	'94
수 요	내 수 용	6.93	6.21	6.0
	수 출 용	-	-	-
공 급	국내 생산	-	-	-
	수 입	6.93	6.21	6.0

외국의 관세율을 보면 우리와 같이 토마토페이스트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의 관세율 구조는 토마토페이스트는 탄력관세 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완제품인 토마토크칩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인 25%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투자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토마토페이스트 생산국인 미국과 대만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이들 품목에 대하여 상당한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세를 개편 시 기후 및 토양조건으로 페이스트 제조용 토마토재배가 불가능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국내 제조업의 투자의욕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

【토마토페이스트 관세율 비교】

(단위 : %)

품 목	국 가			
	한국	일본	미국	대만
토마토페이스트	8	0	13.5	30
토 마 토 케 칩	8	20	7.5	20

4. 유 당

유당은 식품 및 약품제조산업에서 폭넓은 수요를 지닌 원료로 국내에서 전혀 생산이 되지 않고 있는 품목이다. 유당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보면 현행 20%로 상당히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유당에 적용

되는 관세율보다 이를 원료로한 완제품의 관세율이 낮아 국내제조업을 위축시키고 완제품의 수입을 조장하고 있다.

(단위 : %)

원 료		완 제 품	
품 목	관세율	품 목	관세율
유 당	20	초코렛과자 아이스크림등	8

또한 국내에서 전혀 생산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협상 결과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90%가 넘는 초고율의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관련 제조산업의 위축 및 국내물가의 상승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유당의 수급실적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량을 수입하여 국내식품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여 관련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관련제품의 원가상승요인이 되어 국내물가의 안정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당에 대한 UR양허 결과】

(단위 : 톤, %)

품목	구분	'95	'96	'97	'98	~	2004
유당	시장접근 물량 이내	20	20	20	20	20	20
	시장접근 물량 초과	94.1	89.1	84.2	79.2	-	49.5
	시장접근 물량	5,640	6,057.8	6,475.6	6,893.3	-	9,400

【유당의 수급실적】

(단위 : 톤, %)

구 분		'92	'93	'94
수 요	내 수	8,967	9,979	11,424
	수 출	-	-	-
	계	8,967	9,979	11,424
	(증가율, %)	5.90	11.28	14.48
공 급	생 산	-	-	-
	수 입	8,967	9,979	11,424
	(비 중, %)	100	100	100

유당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율의 인하를 통하여 국내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관련 생산제품의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 유지류

유지는 동물성 유지와 식물성유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마아가린, 쇼트닝, 마요네즈의 원료로 사용되는 식물성 유지의 관세율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식물성 유지의 종류에는 팜유, 대두유, 옥배유, 면실유, 해바라기씨유 그리고 유채유 등이 있다. 이들 품목의 관세율 구조를 보면 팜유가 3%이고 나머지 식물성 유지가 8%이다. 다만, 해바라기씨유가 25%이고 유채유가 30%로 이 두품목에 대하여만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유지류에 적용되는 관세율 구조의 문제점은 먼저 관련 완제품보다 관세율이 상당히 높은 일부 원료용 유지의 높은 관세율이다. 관련 완제품인 마아가린, 쇼트닝, 마

요네즈 등의 관세율이 8%인 반면 해바라기씨유는 25%이고 유채유는 30%를 적용하고 있어 유지류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유지류 관련제품의 관세율 구조】

(단위: %)

원 료		완 제 품	
품 명	관세율	품 명	관세율
해바라기씨유	25	마 아 가 린	8
유 채 유	30	쇼 트 닝	8

현재 해바라기씨유는 국내생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유채는 제주도에서만 재배되고 있으며 유채유 생산량은 80년의 1만 164톤에서 92년 1천800톤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국산 유채유의 전체 유지소요량 중 점유율은 0.32% 정도로 극히 미량이나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국제유가의 하락시 타 유지와의 선택적 구매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국내 유채유 생산현황】

(단위: 톤)

구 분	1980	1984	1986	1988	1990	1991	1992
국산유채유생산량(A)	10,185	3,430	2,200	2,643	2,662	2,407	1,797
국 산 유 지 생 산 량	48,321	37,430	51,240	38,137	49,088	44,869	33,491
유 지 수 입 량	147,194	303,570	320,640	370,320	537,814	515,356	511,546
유 지 총 공 급 량 (B)	195,515	341,000	371,880	408,457	586,902	560,224	545,037
A/B	5.49	1.0	0.59	0.64	0.45	0.42	0.32

해바라기씨유 및 유채유의 관세율을 타 원료 유지와 동등하게 조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도 유지의 총수입량이 증가되기 보다는 국제시세가 낮은 품목의 수요를 창출하고 타 유종의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총유지수입량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관세율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국제시세의 변동에 따라서 유종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다.

유지류 품목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율 조

정이 이루어진다면 식용유지업체는 국제시세의 변동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시세차를 구매에 즉각 반영할 수 있으므로 원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외화를 절감하여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는 대체품목간 관세율의 현격한 격차로 말미암아 유지수입시 유동적인 국제시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오히려 값비싼 유종을 수입하는 모순이 발생하며 특정 유지의 수요를 제한하여 다양한 관련 완제품의 생산 및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

【각종 유지류의 관세율 및 수입실적('94년도 기준)】

(단위 : M/T, 1,000US\$)

유종	우지	팜유류	대두유	옥배유	면실유	야자유	해바라기씨유	유채유
관세율	3	3	8	8	8	5	25	30
수량	7,244	130,000	31,402	23,385	15,709	50,179	308	11,511
금액	3,850	78,000	19,609	17,827	13,187	113,438	313	7,689

다음의 표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대두유의 국제시세가 해바라기씨유나 유채유보다 낮은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94년 12월과 같이 대두유보다 해바라기씨유와 유채유보다 높은 경우에도 관세부과후에는 오히려 대두유가 낮은 가격에 수

입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외화가 낭비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식물성 유지의 관세율을 동일 세율로 조정하고 향후 전체 원료용 유지의 관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최근 유종별 국제시세 동향】

(단위 : US\$/ton)

유종 (관세율)	우지 (3%)	팜유 (3%)	대두유 (8%)	해바라기씨유 (25%)	유채유 (30%)	
'94년 10	국제시세	550	606	627	643	640
	관세부과후	566.50	624.18	677.16	803.75	832.00
11	국제시세	585	713	689	671	680
	관세부과후	602.55	734.39	744.12	838.75	884.00
12	국제시세	660	703	703	669	685
	관세부과후	679.80	724.09	759.24	836.25	890.50
'95년 1	국제시세	660	649	693	629	720
	관세부과후	679.80	668.47	748.44	785.00	936.00
2	국제시세	585	685	675	620	676
	관세부과후	602.55	705.55	729.00	775.00	878.80

6. 초코렛류

초코렛은 코코아두를 원료로 생산되는 제품으로 코코아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료이다. 초코렛 관련제품은 코코아두와 코코아가공품인 코코아버터, 코코아페이스트, 코코아분말 등의 중간재 성격의 제품이 있고 완제품인 초코렛 및 초코렛과자 등이 있다.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 현황을 보면, 코코아두는 현재 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제품은 완제품인지 중간재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초코렛의 관세율 구조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는 점은 먼저 원료인 국내 완전비경쟁 품목인 코코아두에 대한 관세율이 무세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철강재나 기타 기간산업의 원료에 대하여도 2% 내외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장 무세화로 전환되는 것은 적절치 않

【초코렛 관련제품의 관세율 구조 비교】
(단위 : %)

품 목	국 가		
	한국	미국	일본
코 코 아 두	3	0	0
코 코 아 페 이 스트	8	0	0
코 코 아 분 말	8	0.82/	21.5
초코렛및초코렛과자	8	7	35

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저관세율시대의 조류에 순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러한 성격의 품목에 대하여는 무세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중간재 성격인 코코아버터, 페이스트, 분말은 완제품인 초코렛이나 초코렛과자와 구분하여 차등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원료를 완제품과 동일한 세율로 관세화하는 경우에는 원료의 전량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외국보다 인건비나 토지사용료 등 생산비용이 저렴하지 않는 한 국내 제조업의 투자유익을 위축시키고 완제품의 수입을 촉진시켜 유통부문만 확장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외국의 관세율과 비교하여 볼 때 외국은 원료와 완제품간 현격한 차등관세율을 적용하여 국내 제조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율 구조는 이러한 기능적 측면이 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초코렛과자의 수급현황】
(단위 : 톤, %)

구 분		'92	'93	'94
수	내 수 용	42,504	40,572	34,908
	수 출 용	1,949	4,553	1,813
	계	44,453	45,125	36,751
전년대비증가율		-	1.5	18.6
공급	국 내 생 산	37,785	37,905	30,981
	수 입	6,668	7,220	57,704
	수 입 비 중	15.0	16.0	15.7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같이 최근 3년간 초코렛과자의 수급실적을 보면 특별한 수입증가나 수출 신장의 움직임은 없으나, '89년의 초코렛과자 수입물량이 3,060톤에 불과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수입물량의 급격한 증가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시정을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초코렛 제조산업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세를 포함한 세제가 조정되는 등 정책적인 지원조치들이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7. 제 과 류

제과류중 특히 건과류는 원료와 제품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고 물량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는 많은 지면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몇가지 원료와 완제품간 관세율의 불균형 요소와 수출지원의 정책적 배려로서 고려될 수 있는 관세율 조정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과류의 원료로 사용되는 견과류는 과거 낙화생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아몬드, 피스타치오, 캐슈넛 등 다양한 외국의 수입 견과들이 원료로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낙화생 이외의 견과들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낙화생의 보호를 위하여 30%라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과를 원료의 일부로 사용한 완제품 과자류 및 아이스크림 등은 8%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견과류의 관세율 변동 추이】
(단위 : %)

품 목	'89	'90	'91	'92	'93	'94	'95
아 몬 드	40	40	40	35	35	30	30
캐 슈 넛	40	40	40	35	35	30	30
스위트비스켓	15	13	13	11	9	8	8
비스켓,쿠키,크래커	15	13	13	11	9	8	8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89년에는 과자류와 수입견과의 관세율 차이가 15%였으나 현재는 22%로 관세율의 가공단계별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일반적인 추세와도 불일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원료와 완제품 간 관세율 격차로 수입물량이 계속 증가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제과업체들중에는 자사의 생산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입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과자류의 수출실적은 91년 55백만달러에서 93년 9백만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나, 수입도 '92년 2,431톤에서 '94년에는 3,809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코과자의 수급현황】

(단위 : 톤, %)

구 분		'92	'93	'94
수	내 수	61,450	65,772	79,805
	수 출	1,281	2,656	2,729
	계	62,731	68,428	82,534
요	증 가 율	-	9.1	20.6
	공	생 산	60,300	65,650
급	수 입	2,431	2,778	3,809
	수입비중	8.0	4.1	4.6

【과자류 수출실적】

(단위 : 천불, %)

	1991	1992	1993	1994
수출실적	55,816	78,118	85,225	97,855
증가율 (91년대비)	-	39.95	52.68	75.31

이러한 수입증가추세는 외국관세율에 비하여 완제품에 대한 국내 관세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수입품에 비하여 약화되기 때문일 수 있다. 외국의 값싼 원료를 제조하여 생산된 수입품과 수입원료를 고관세율로 인하여 고가로 구입하여 제조한 국내 제품이 외국제품과 이러한 관세율 구조하에서 국내시장을 지켜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의 현행 관세율을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이러한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과자류 품목의 관세율 비교】

(단위 : %)

품 목	한 국	미 국	일 본	E U
아 몬 드	30	12.1℄/kg(비탈각) 37.5℄/kg(탈각)	무 세	무 세
캐 슈 너트	30	무 세	20	5
스 위 트 비 스 킷	8	무 세	40	13+MOB MAX35+ADS/Z
비스킷, 쿠키, 크래커	8	무 세	40	"

※ ADS/Z : Additional Duty on Sugar(설탕함유시 추가관세)

MDB : Variable Component(일종의 조정관세)

미국의 경우에는 과자류에 대한 경쟁력이 강하므로 특별히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기에 위와 같은 관세율이 설정되었겠으나 일본의 관세율 구조가 보여주는 시사점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일본은 아몬드의 관세율을 무세로 하고 완제품인 과자류는 40%로, 또다른 원료인 캐슈넛은 완제품보다는 낮은 20%로 적용하고 있다. 우리의 관세율 구조와는 달리 합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가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검(gum)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검의 원료인 추잉검베이스나 마이크로크리스탈린왁스, 초산비닐, 폴리이소부틸렌 등의 관세율은 완제품인 검과 마찬가지로 8%이다. 이는 우리와 같이 검에 대하여 상당한 국제경쟁력을 지닌 일본의 관세율과는 다른 모습이다. 일본의 경우 국제 경쟁력을 지닌 일본의 관세율과는 다른 모습이다. 일본의 경우 원료인 마이크로크리스탈린왁스, 천연동석, 향료, 폴리이소부틸렌, 초산비닐중합체 등에는 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완제품인 검에 대하여는 무려 40%라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율 구조로 인하여 완제품인 검의 수입실적은 '89년 15.9톤에서 '93년에는 398톤으로 엄청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검의 수출실적도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식품산업과 같은 경공업 소비재 산업의 경우 내수시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안정없이는 원활한 수출의 증대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관세율 구조의 수립을 통하여 수입품의 범람을 지양하여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수출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도별 검 수출실적】
(단위: 백만원, %)

	1991	1992	1993	1994
수출실적	17,783	25,843	30,980	38,852
증가율 (90년대비)	51.12	119.62	163.27	230.17

8. 향 료

향료제조산업은 우리나라의 식품 및 약품산업에서 가장 폭넓은 수요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발전이 더딘 산업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연간 향료수요는 약 1,0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중 80%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료는 크게 천연물에서 추출된 천연오일류의 향료가 있고, 화학적으로 합성된 합성향료, 그리고 앞의 두가지를 적절히 조합하여 생성된 조합향료가 있다. 국내의 향료제조산업은 주로 조합향료의 생산과 외국에서 생산된 향료를 수입하여 수요처에 납품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나 식품산업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으며 외국에서의 수요도 큰 제품이 향료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우리의 식품산업이 향료를 무분별하게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향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향료산업을 외자도입법상의 고도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세제 및 금융상 많은 혜택을 부여하면서 육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향료의 관세율 구조는 원료 및 완제품이 공히 8%이다. 향료제조산업이 화학공업적 성격이 강하므로 Uniform Tariff System을 유지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나, 향료산업이 아직도 유치산업이므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단계까지는 보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관세율 구조도 완제품인 조합향료는 대폭 상향조정하고 원료용으로 수입되는 천연오일류나 합성향료는 인화 적용하여 국내 향료제조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V. 맺 음 말

식품은 그 동안 소비재산업,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어 수출지향적 경제구조하에서 정책담당자들의 시야에서 멀리 위치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농업과 같이 정치적 영향력이 커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할만한 산업도 아니었다. 이러한 식품 산업에 대한 국가적 무관심이 가장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 관세율 구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글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관세(관세율)정책을 살펴보고 식품산업에서는 그러한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식품은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이러한 건강은 국가적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단순히 부가가치와 공업적 성격만으로 식품산업을 규정하는 것은 지엽적인 발상이라고 본다. 또한 식품산업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전방 연관효과로서

농업의 구조 및 체질개선 효과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식품산업의 비중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성장지향적 경제정책의 초점이 식품산업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현재 식품산업의 정책적 여건은 그리 양호하지 못한 형편이다. 세계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교역을 확대하는 시점에서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단기간내에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의 식품산업이 시급히 경쟁력을 제고시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제품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는 산업내부의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나 정부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관세율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식품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